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39호 2015. 12. 2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9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7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746호 등록 공인 공고 ----- 28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현로42번길 34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2. 1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12-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85-27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42번길 34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34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81-10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34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81-11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298, 64-351, 64-35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81-12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346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81-13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21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81-7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45-8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411 (경서동)	2009-07-10	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징맹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징맹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 <경명>명칭에서 부여	
8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87-8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번길 7-7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9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36-14, 235-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31번길 22 (금곡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35, 236-10, 236-9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31번길 22-1 (금곡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73-17, 273-27, 273-25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68번길 63-23 (금곡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51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30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76-6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00 (원창동, (주)나무친구들)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향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19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1번길 18 (석남동, (주)신화산업)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12, 611	인천광역시 서구 신동안길 6-44 (금곡동)	2009-09-22	신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1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63-1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3길 8 (마전동)	2008-12-31	원당대로685번길에서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29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112 (석남동, 상신목재(주))	2009-09-22	원창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	
1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26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90번길 5 (석남동, 진흥포장산업(주))	2015-11-13	원석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78-6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7로 18 (오류동)	2012-10-25	우리구 해님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일곱번째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인천광역시 서구 청중로478번안길 3 (가정동, 주원프라자)	2012-10-25	청중로47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78-93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66-73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9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12.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1568번길 63-1외 1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도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5-12-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73-1	봉수대로1568번길 63-1	2015.12.07	건물 멸실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11,612	신동안길 6-44	2015.12.10	건물 멸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7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관련법령의 명칭 등 개정사항을 반영.
- 상위 법령의 표준수수료 범위를 초과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조례개정을 통해 표준수수료 범위내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법령의 명칭 등 개정사항 반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반영
 - 「건설기계관리법」, 「의료법 시행규칙」,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수수료 일부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

- 상위 법령의 표준수수료 범위를 초과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수수료 조정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세무1과)에게 2016. 1. 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968,
FAX 032-560-272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관련법령의 명칭 등 개정사항을 반영.
- 상위 법령의 표준수수료 범위를 초과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조례개정을 통해 표준수수료 범위내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법령의 명칭 등 개정사항 반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반영
 - 「건설기계관리법」, 「의료법 시행규칙」,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수수료 일부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
- 상위 법령의 표준수수료 범위를 초과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수수료 조정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를 “또는 가족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분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	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800원	
(5)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당	300원	
(6) 선급금 정산확인원	"	300원	
(7)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당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8)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당	600원	
2. 문화관광체육분야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수수료	"	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0,000원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9)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4,000원	
(3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00,000원	
(3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	"	50,000원	
(3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30,000원	
(3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20,000원	
(4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50,000원	
(4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등록신청 수수료	"	30,000원	
(4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4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4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30,000원	
(4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 부동산중개업분야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	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800원	
(4)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0,000원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	800원	
(6)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수수료	"	0원	

(7) 증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800원	
4. 농수산업분야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	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30,000원	
(9)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11)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12)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13)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	1,000원	
(1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17)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18)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9)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1,000원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2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22)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1,000원	
(23)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24)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2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26)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7)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2,500원	
(28)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9)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	4,000원	
(30)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	4,000원	
(31)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500원	
(32)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2,000원	
(33)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2,000원	
(34)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35) 어업 신고 수수료	"	1,500원	

(3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500원	
(3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3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39)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	800원	
(40)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41)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800원	
(42)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43)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3,000원	
(44)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	3,000원	
(45)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46)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7)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4,500원	
(49)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0)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1)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4)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6)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000원	
(57)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3,000원	
(5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60) 어획물 운반업 등록	"	5,500원	
(6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	500원	
(62)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 허가	"	1,000원	
(63)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 허가	"	500원	
(6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1,600원	
(65)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800원	
(66)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 허가, 변경 허가 포함)	"	2,000원	
(67)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 허가, 변경허가 포함)	"	1,000원	

5. 공장설립분야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6. 석유판매업분야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7. 환경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	5,000원	
8. 보건사회분야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10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8)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10)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00,000원	
(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13)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800원	
(14)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당	500원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당	40,000원	
(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	20,000원	
9. 도시계획분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1,500원)	
(2) 환지(예정지) 증명	1통당	400원	
10. 교통행정분야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500원	
(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원	"	1,000원	
11.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본·초본	1통	200원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1장 초과마다	400원 100원	
(3)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	1건	500원	
(4) 건축물관리대장	1건	4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개년필지 1필지	600원 8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칼러불가) 1건	6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	1건	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200원	
- 관외	1건	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400원	
- 관외	1건	400원	
(10) 농지원부	1건	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1건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원	
-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검정고시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국문·영문)	1건	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국문·영문)	1건	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초·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제적증명서	1건	무료	
- 정원외관리증명서	1건	무료	
- 졸업예정증명서	1건	무료	
- 교육비납입증명서	1건	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5) 장애인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6) 수급자 증명서	1건	무료	
(17) 병적증명서	1건	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000원	
(19) 어선원부	1건	7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p> <p>3. 4. (생략)</p> <p>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p> <p>6. (생략)</p> <p>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p> <p>8. ~ 12.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또는 가족이</u> -----</p> <p>3. 4. (현행과 같음)</p> <p>5.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 -----</p> <p>6. (현행과 같음)</p> <p>7. 「<u>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 -----</p> <p>8. ~ 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발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삭제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 류	표준금액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제93조(수수료)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종 목	금 액
5.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갑,을부) 또는 초본(갑부)의 교부신청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등본 1건에 대하여 500원 초본 1건에 대하여 5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을 처리한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일부개정]

업 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 고
계		68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필요	
토지건 지적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	불필요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 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4	불필요	
차 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간)	1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간)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요	
	장애인증명서	1	필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요	
농 촌	농지원부	1	필요	
병 적	병적증명서 ※군복무사면제자,제국민역	3	필요	
지 방 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 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 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필요	
건 축 (법원)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불필요	
제 적	제적등본	1	필요	
	제적초본	1	필요	
가족관계 등 록 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인양관계 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교 육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2	필요	신규(영문)
	성적증명서	1	필요	
	학교생활기록부(초, 중, 고)	3	필요	신규(초, 중)
	제적증명서	1	필요	신규
	정원외관리증명서	1	필요	신규
	졸업예정증명서	1	필요	신규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필요	신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필요	
수 산	어선원부	1	필요	

□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8.6.>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	명 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입원실	의료인	개설예정일	
	실	명	년	월
			일	
신고인 (개설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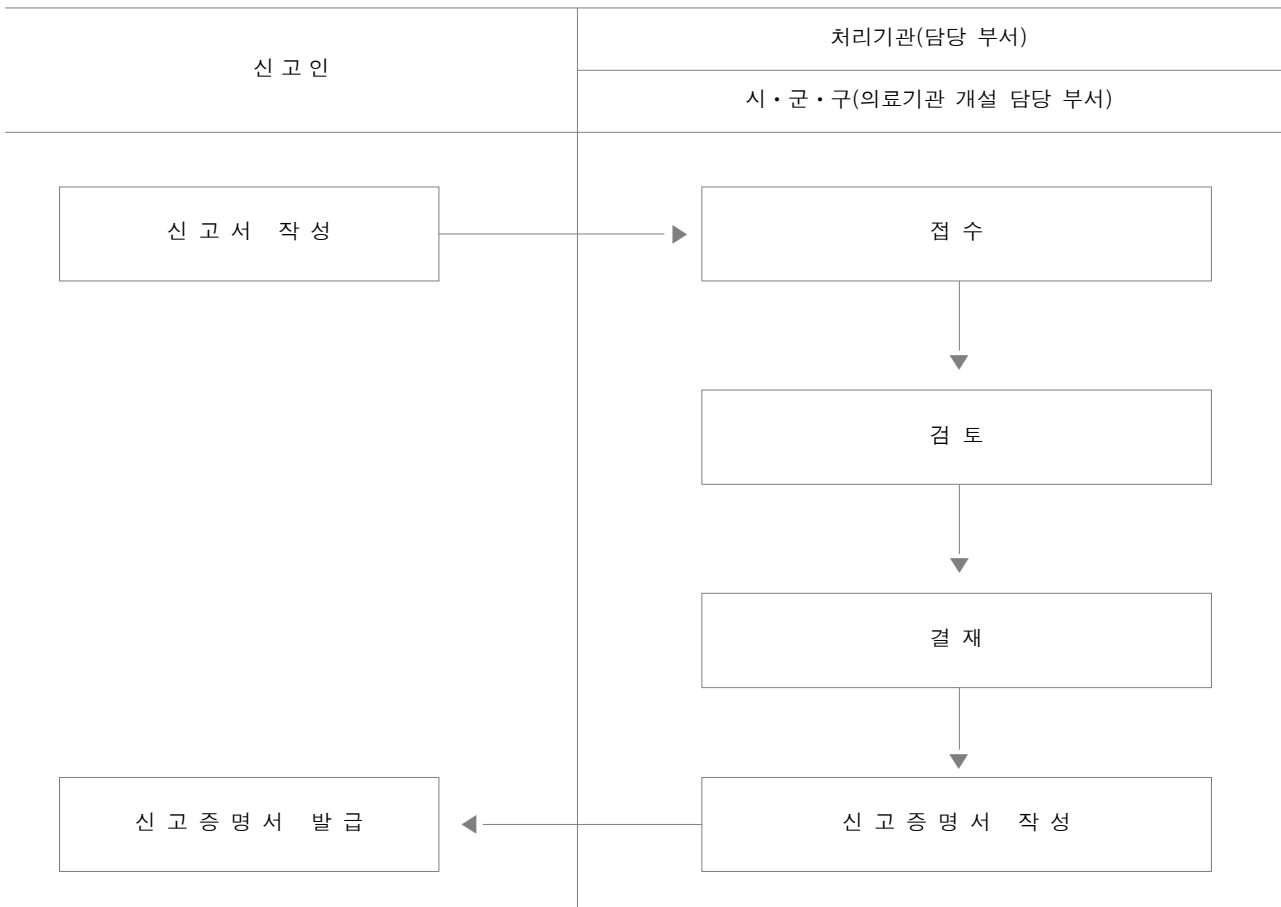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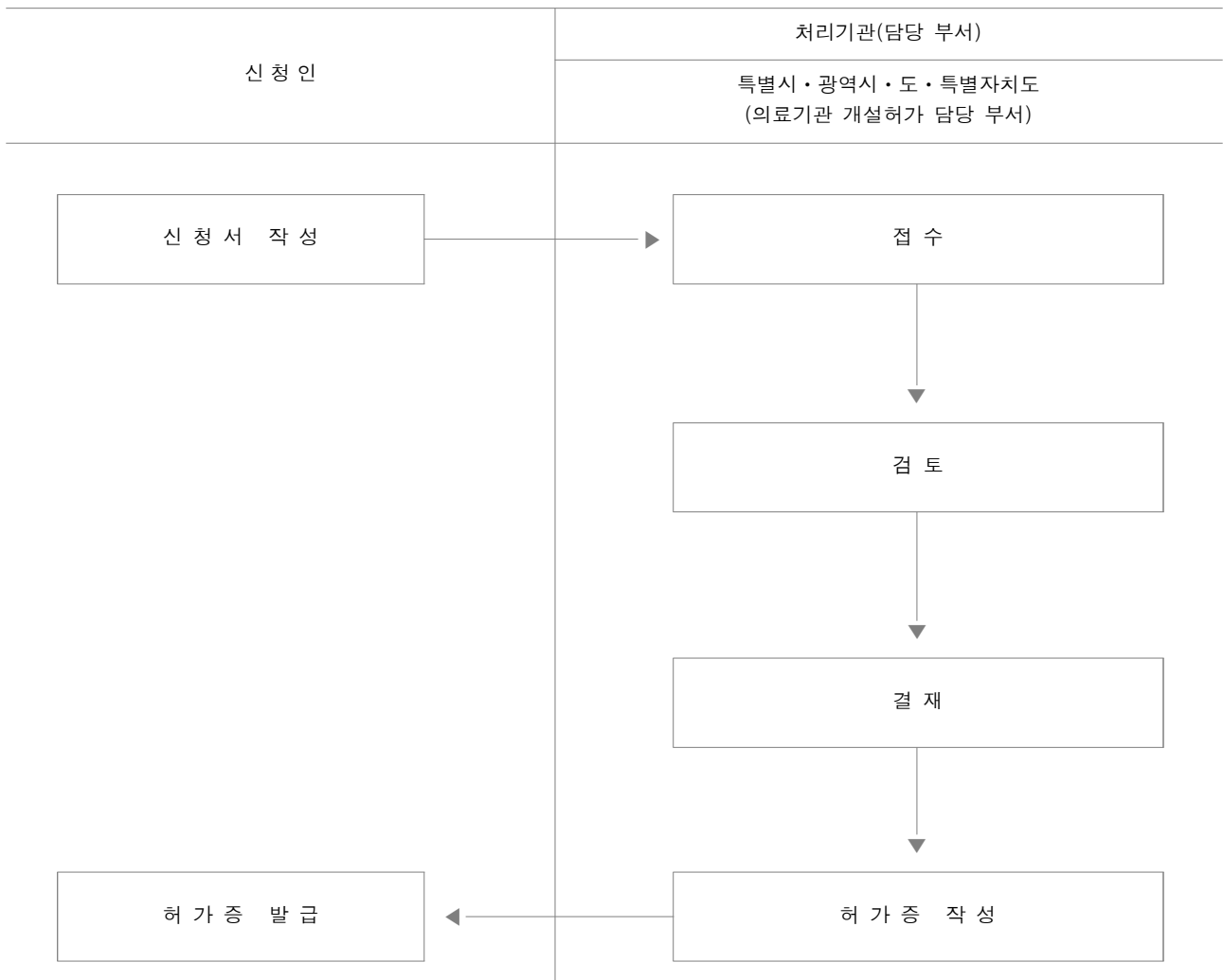
(뒤쪽)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4.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8.6.>

[]신고(변경신고)서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청)인 (개설자)	명칭		
	소재지	종업원 수 명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의료기관	명 칭	종류	
	소재지	개설예정연월일 년 월 일	
	진료과목		
	진료대상자 범위		
규모	종업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	실	병상 병상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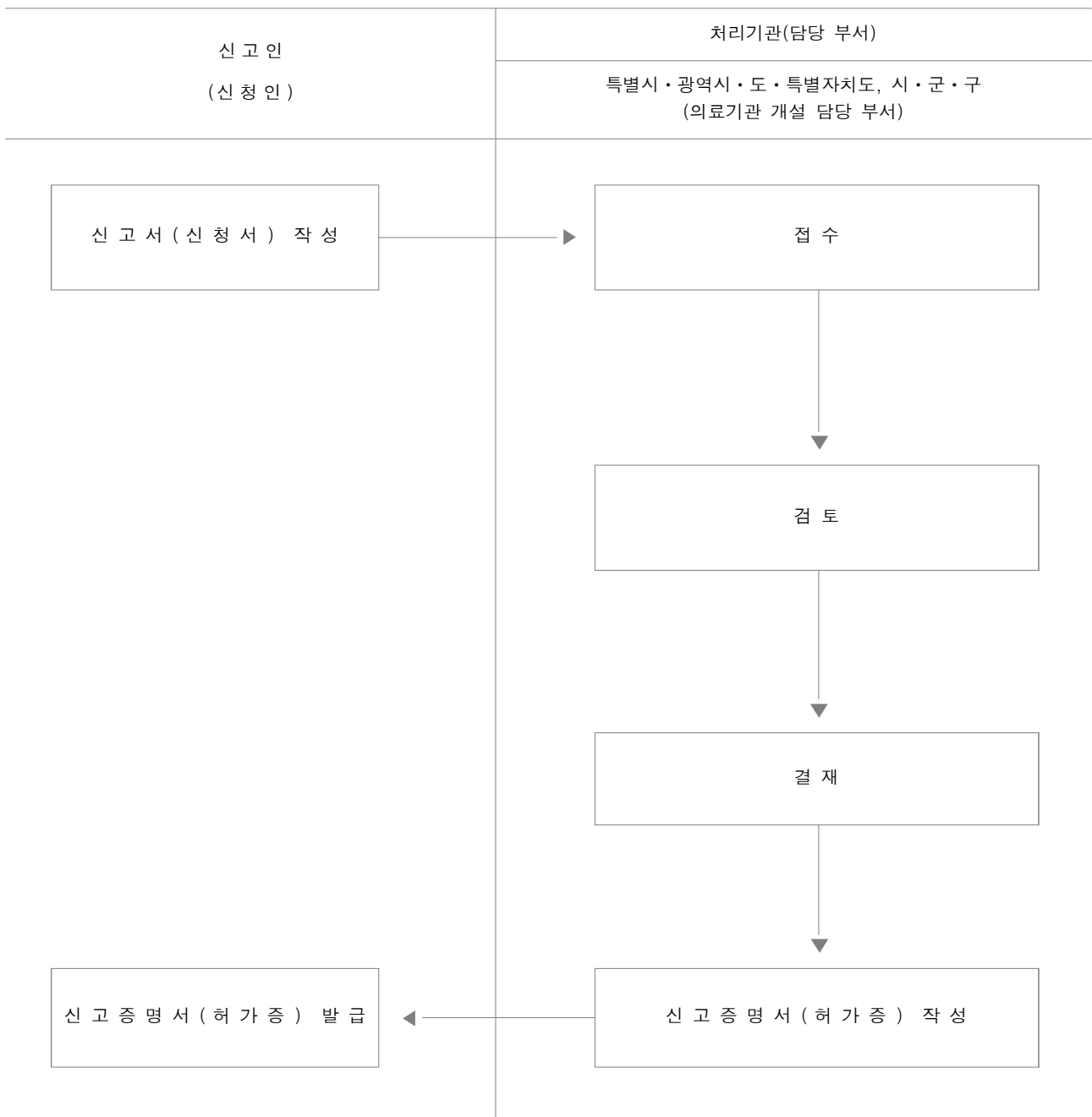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개설신고(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개설 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인천광역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조치

1. 보건정책과-370(2015.1.6.)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82호, 2015.1.2.)으로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고) 수수료 징수 규정이 삭제되었기 알려드리오니, 군·구에서는 자치단체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4호, 제16호, 제20호 서식 변경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고)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

- 변경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
- 변경후 :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

붙임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

인천광역시장

수신자 인천광역시 출구출장(건강증진과장), 인천광역시 출구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인천광역시 남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연수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남동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북동구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계양구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강화군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동진군보건소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출장(환경복지과장)

주부관 최병국 보안부관리단 정업 2015. 1. 16.
담당 김철해

참조자

시행 보건정책과-1401 (2015. 1. 16.) 징수 보건행정과-1172 (2015. 1. 16.)

주 406-7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잠각로 29 (구출동, 인천광역시출) / http://incheon.go.kr

전화번호 032-440-2732 팩스번호 032-440-8884 / cbook0@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말로 개발과 공부를 일치하는 줄고 생활을 관리해집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746호

등록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2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등록 사유

○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15년 12월 28일

3. 등록 공인 내역

“별첨 참조”

○ 등록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지적재조사위원회인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2월 28일	